변 경 대 비 표

1. 펀드명 : 하나UBS 코스닥벤처기업&공모주증권투자신탁[주식혼합-파생형]

2. 주요 변경내용 : 코넥스 관련 내용 추가 및 정정 등

3. 변경효력발생(예정)일 : 2018년 07월 02일

4. 대비표

[집합투자규약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제17조(투자대상자산 등)	1. 법 제 4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 4 조제 8 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(법 제 9 조제 15 항 제 3 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에 한한다)(이하 "주식"이라 한다)	1. 법 제 4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 4 조제 8 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(주권비상장법인이 발행한 것을 제외하되, 법 제 9 조제 15 항제 3 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(비상장주식 포함)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에 한한다) (이하 "주식"이라 한다)
	1-1.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2 조제 2 항에 따른 벤처기업이 발행한 주식(비상장기업이 발행한 주식은 제외하되, 상장 기업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은 포함한다.)(이하 "벤처기업신주"라 한다.)	<삭제, 제 18 조에 해당내용 반영>
	1-2.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 년이 경과하지 않은 코스닥상장 중소·중견기업의 신주 및 구주(이하 "벤처기업상장주"라고 한다)	<삭제, 제 18 조에 해당내용 추가>
제18조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	1. 주식 및 주식관련 장내파생상품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% 이하로 한다.	1. 주식 및 주식관련 장내파생상품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% 이하로 한다. (단, 비상장주식에의 투자는 20% 미만으로 한다.)

	1-1. 벤처기업신주, 주식관련사채권 및 벤처기업코스닥상장주에 대한 투자는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% 이상으로 하며, 이 경우 벤처기업신주 및 주식관련사채권에 대한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5% 이상으로 한다.	1-1.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6 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50% 이상일 것.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 1)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5% 이상이어야 한다. 가.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)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 2 조제 2 항에 따른 투자 2)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.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 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10 조제 1 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가목 1) 및 2)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
	1-2. 1-1호의 투자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제1-1호의 투자대상자산 매일의 비율(이하 "일일보유비율")을 6개월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비율(이하 "평균보유비율")이 벤처기업신주, 주식관련사채권 및 벤처기업코스닥상장주는 50% 이상, 벤처기업신주 및 주식관련사채권은 15% 이상으로 한다.	1-2. 제1-1호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호 각목 이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50% 및 15% 이상이어야 한다.

[간이투자설명서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Ⅱ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	**[1] 투자전략** **1. 투자목적** - 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 16 조제 1 항제 2 호 및 동 법시행령 제 14 조제 1 항제 3 호 등에 기반한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 벤처기업신주(비상장기업이 발행한 주식은 제외하되, 상장 기업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은 포함하며, 비상장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% 미만으로 제한), (생략) **2. 투자전략** (1) 주식에의 투자 –벤처기업 코스닥 상장주 및 벤처기업신주 등 -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와 연계해 코스닥 공모주 일정 및 관련 종목 리서치를 시행하며, 공모주 배정 후 선별하여 코스닥 벤처기업의 신주를 펀드 자산의 15% 수준으로 보유 - 세제혜택과 관련된 법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벤처기업 코스닥 공모주 및 코스닥 주식을 대상으로 주식 포트폴리오 구축 - 시장상황에 따른 적절한 리밸런싱 수행 **3. 운용전문인력** (생략)	**[1] 투자전략** **1. 투자목적** - 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 16 조제 1 항제 2 호 및 동 법시행령 제 14 조제 1 항제 3 호 등에 기반한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 벤처기업신주(주권비상장법인이 발행한 것을 제외하되,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은 포함하며, 비상장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% 미만으로 제한), (생략, 현행과 동일) **2. 투자전략** (1) 주식에의 투자 – 벤처기업 상장주 및 벤처기업신주(코스닥 · 코넥스 상장기업) 등 - 세제혜택과 관련된 법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벤처기업 코스닥·코넥스 공모주 및 주식을 대상으로 주식 포트폴리오 구축 - 코스닥·코넥스의 벤처기업신주(공모주 및 CB, BW 등 벤처기업신주로 인정되는 주식관련사채 포함)에 펀드 자산의 15% 수준으로 투자 -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와 연계해 코스닥·코넥스 관련 종목 리서치를 시행, 선별 투자 - 시장상황에 따른 적절한 리밸런싱 수행 **3. 운용전문인력** (업데이트)
Ⅱ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	**[2]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** 1. 주요 투자위험	**[2]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** 1. 주요 투자위험

정보	**코스닥 투자위험** 집합투자재산을 코스닥 주식에 투자함으로써 해당 주식의 성과에 따라 수익률의 변동성이 매우 클 수 있습니다. 일반적으로 코스닥 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은 상장 주식전체를 투자대상으로 하는 일반 주식형 펀드보다 개별 종목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더 높은 위험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 <추가>	**코스닥 투자위험** 집합투자재산을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이 발행한 증권(상장주식, 비상장주식을 포함한 주식관련사채 등) 및 코스닥 공모주등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. 일반적으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업은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기업에 비해 재무상황 및 경영기반 등이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으며, 비교적 자유로운 진입과 퇴출 등 보다 완화된 규제를 적용 받으므로 유동성 및 시장, 신용위험 등의 측면에서 매우 큰 위험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이로 인해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이 발행한 증권 및 코스닥 공모주 등은 코스피 시장 상장된 기업이 발행한 증권에 비해 변동성은 매우 높은 반면 유동성은 매우 낮을 수 있어 본 투자신탁의 운용성과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**코넥스 투자위험**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재산의 일부를 코넥스에 상장된 기업이 발행한 증권(상장주식, 비상장주식을 포함한 주식관련사채 등) 및 코넥스 공모주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. 일반적으로 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기업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에 비해 완화된 공시의무를 적용 받으므로 투자관련 정보 확인이 제한적일 수 있으며, 재무상황 및 경영기반 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창업초기의 중소기업이므로 유동성 및 시장, 신용위험 등의 측면에서 매우 큰 위험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이로 인해 코넥스

		에 상장된 기업이 발행한 증권 및 코넥스 공모주 등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이 발행한 증권에 비해 변동성은 매우 높은 반면 유동성은 매우 낮을 수 있어 본 투자신탁의 운용성과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

[투자설명서(일괄신고서)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<추가>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2018 년 07 월 02 일 코넥스 관련 내용 추가 및 정정 등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문구 수정, 투자전략, 투자위험)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(생략)	**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(업데이트)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7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** - 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 16 조제 1 항제 2 호 및 동 법시행령 제 14 조제 1 항제 3 호 등에 기반한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 벤처기업신주,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 년이 경과하지 않은 코스닥상장 중소·중견기업의 신주 및 구주에 주로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동시에 세제혜택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	**7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** - 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 16 조제 1 항제 2 호 및 동 법시행령 제 14 조제 1 항제 3 호 등에 기반한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 벤처기업신주(주권비상장법인이 발행한 것을 제외하되,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은 포함하며, 비상장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% 미만으로 제한),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 년이 경과하지 않은 코스닥상장 중소· 중견기업의 신주 및 구주에 주로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동시에 세제혜택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2부 집합	**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**	**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**

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(1) 투자대상 (별첨 1 참조)	(1) 투자대상 (별첨 1 참조)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9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,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** **가. 투자전략** - 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 16 조제 1 항제 2 호 및 동 법시행령 제 14 조제 1 항제 3 호 등에 기반한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 벤처기업신주(비상장기업이 발행한 주식은 제외하되, 상장 기업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은 포함하며, 비상장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% 미만으로 제한), (생략) (1) 주식에의 투자 – 벤처기업 코스닥 상장주 및 벤처기업신주 등 -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와 연계해 코스닥 공모주 일정 및 관련 종목 리서치를 시행하며, 공모주 배정 후 선별하여 코스닥 벤처기업의 신주를 펀드 자산의 15% 수준으로 보유 - 세제혜택과 관련된 법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벤처기업 코스닥 공모주 및 코스닥 주식을 대상으로 주식 포트폴리오 구축 - 시장상황에 따른 적절한 리밸런싱 수행 <예시 포트폴리오> (별첨 2 참조) * 코스닥 주식 포트폴리오(코스닥 신주, 장내 매입한 벤처기업 요건 해당	**9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,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** **가. 투자전략** - 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 16 조제 1 항제 2 호 및 동 법시행령 제 14 조제 1 항제 3 호 등에 기반한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 벤처기업신주(주권비상장법인이 발행한 것을 제외하되,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은 포함하며, 비상장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% 미만으로 제한), (생략, 현행과 동일) (1) 주식에의 투자 – 벤처기업 상장주 및 벤처기업신주(코스닥 · 코넥스 상장기업) 등 - 세제혜택과 관련된 법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벤처기업 코스닥·코넥스 공모주 및 주식을 대상으로 주식 포트폴리오 구축 - 코스닥·코넥스의 벤처기업신주(공모주 및 CB, BW 등 벤처기업신주로 인정되는 주식관련사채 포함)에 펀드 자산의 15% 수준으로 투자 -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와 연계해 코스닥·코넥스 관련 종목 리서치를 시행, 선별 투자 - 시장상황에 따른 적절한 리밸런싱 수행 <예시 포트폴리오> (별첨 2 참조) * 주식 포트폴리오(벤처기업신주 신주, 장내 매입한 벤처기업 요건 해당 종목

	종목 등)와 코스닥 150 선물은 상호 구성 종목의 차이로 인해 성과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식 순노출도 관리를 위해 활용하는 선물 매도 포지션으로 본래의 의도와 달리 수익률의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고 펀드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. ※ 위 예시 포트폴리오 상의 코스닥 주식, KOSDAQ150 선물 등에의 투자비중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.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.	등)와 코스닥150선물은 상호 구성 종목의 차이로 인해 성과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식 순노출도 관리를 위해 활용하는 선물 매도 포지션으로 본래의 의도와 달리 수익률의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고 펀드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. ※ 위 예시 포트폴리오 상의 주식, KOSDAQ150선물 등에의 투자비중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.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.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** 나. 특수위험 **코스닥 투자위험** 집합투자재산을 코스닥 주식에 투자함으로써 해당 주식의 성과에 따라 수익률의 변동성이 매우 클 수 있습니다. 일반적으로 코스닥 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은 상장 주식전체를 투자대상으로 하는 일반 주식형 펀드보다 개별 종목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더 높은 위험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	**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** 나. 특수위험 **코스닥 투자위험** 집합투자재산을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이 발행한 증권(상장주식, 비상장주식을 포함한 주식관련사채 등) 및 코스닥 공모주등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. 일반적으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업은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기업에 비해 재무상황 및 경영기반 등이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으며, 비교적 자유로운 진입과 퇴출 등 보다 완화된 규제를 적용 받으므로 유동성 및 시장, 신용위험 등의 측면에서 매우 큰 위험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이로 인해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이 발행한 증권 및 코스닥 공모주 등은 코스피 시장 상장된 기업이 발행한 증권에 비해 변동성은 매우 높은 반면 유동성은 매우 낮을 수 있어 본 투자신탁의 운용성과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

	<추가>	**코넥스 투자위험**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재산의 일부를 코넥스에 상장된 기업이 발행한 증권(상장주식, 비상장주식을 포함한 주식관련사채 등) 및 코넥스 공모주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. 일반적으로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기업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에 비해 완화된 공시의무를 적용 받으므로 투자관련 정보 확인이 제한적일 수 있으며, 재무상황 및 경영기반 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창업초기의 중소기업이므로 유동성 및 시장, 신용위험 등의 측면에서 매우 큰 위험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이로 인해 코넥스에 상장된 기업이 발행한 증권 및 코넥스 공모주 등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이 발행한 증권에 비해 변동성은 매우 높은 반면 유동성은 매우 낮을 수 있어 본 투자신탁의 운용성과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
	유동성 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집합투자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, 이는 집합투자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. 특히, 이 투자신탁은 코스닥 벤처기업 주식(신주 및 상장기업이 발행한 비상장주식 포함), 전환사채(CB) 및 신주인수권부사채(BW)등 주식관련사채, 코스닥 상장기업 및 공모주 등에 투자할	**유동성 위험**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집합투자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, 이는 집합투자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. 특히, 이 투자신탁은 코스닥 및 코넥스 벤처기업 주식(신주 및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 포함.), 전환사채(CB) 및 신주인수권부사채(BW)등 주식관련사채, 코스닥 및 코넥스 공모주 등

	예정으로 유동성 제약이 있는 증권 등이 편입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상품들은 때때로 유동성이 떨어질 수 있어 집합투자업자가 이를 즉시 현금화하기 곤란하거나 대량환매 시 기준가 변동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.	에 투자할 예정으로 유동성 제약이 있는 증권 등이 편입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상품들은 때때로 유동성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어 집합투자업자가 이를 즉시 현금화하기 곤란하거나 대량환매 시 기준가 변동이 커질 가능성이 있으며 투자원금 대비 손실이 발생하는 등 집합투자재산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.
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. 운용자산규모 (생략)	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. 운용자산규모 (업데이트)

<별첨 1>

[변경전]

(1) 투자대상

투자대상		투자비율	투자대상 내역
①	주식 및 주식관련 장내파생상품	90% 이하	<주식> -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(법 제9조제15항 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을 포함한다) <주식관련 장내파생상품> -법 제5조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관련 파생상품
①-1	벤처기업신주	(1) 벤처기업신주, 주식관련사채권 및 벤처기업코스닥상장주에 대한 투자는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% 이상으로 하며, 이 경우 벤처기업신주 및 주식관련사채권에 대한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5% 이상으로 한다. (2) (1)의 투자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 개월마다 (1)의 투자대상자산 매일의 비율(이하 "일일보유비율)"을 6 개월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비율(이하 "평균보유비율")이 벤처기업신주, 주식관련사채권 및 벤처기업코스닥상장주에는 50% 이상, 벤처기업신주 및 주식관련사채권은 15% 이상으로 한다.	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이 발행한 주식(비상장기업이 발행한 주식은 제외하되, 상장 기업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은 포함한다)
①-2	벤처기업 코스닥상장주		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코스닥상장 중소·중견기업의 신주 및 구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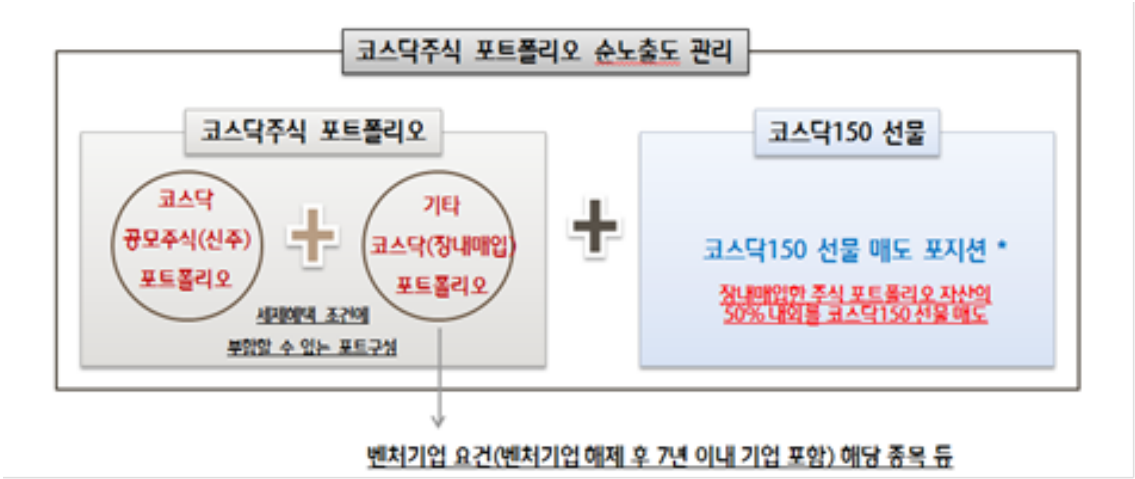
[변경후]

(1) 투자대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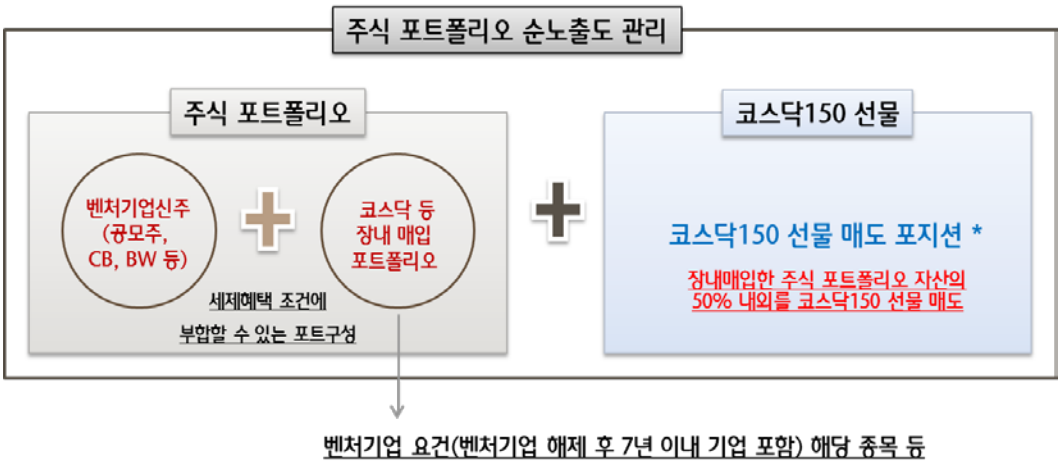
투자대상		투자비율	투자대상 내역
①	주식 및 주식관련 장내파생상품	90% 이하 (단, 비상장주식에의 투자는 20% 미만)	<주식> -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(주권비상장법인이 발행한 것을 제외하되, 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(비상장주식 포함)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을 포함한다) <주식관련 장내파생상품> -법 제5조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관련 파생상품
	①-1.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6 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50%이상일 것.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 1)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5% 이상이어야 한다. 가.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)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제 2 조제 2 항에 따른 투자 2)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.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 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10 조제 1 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가목 1) 및 2)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①-2. ①-1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호 각목 이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50% 및 15% 이상이어야 한다.		
①-1	<삭제>		
①-2	<삭제>		

<별첨 2>

[변경전]


코스닥주식 포트폴리오 순노출도 관리
코스닥주식 포트폴리오
코스닥 공모주식(신주) 포트폴리오
기타 코스닥(장내매입) 포트폴리오
세제혜택 조건에 부합할 수 있는 포트구성
코스닥150 선물
코스닥150 선물 매도 포지션 *
장내매입한 주식 포트폴리오 자산의 50% 내외를 코스닥150 선물 매도
벤처기업 요건(벤처기업 해제 후 7년 이내 기업 포함) 해당 종목 등

[변경후]


주식 포트폴리오 순노출도 관리
주식 포트폴리오
벤처기업신주 (공모주, CB, BW 등)
코스닥 등 장내 매입 포트폴리오
세제혜택 조건에 부합할 수 있는 포트구성
코스닥150 선물
코스닥150 선물 매도 포지션 *
장내매입한 주식 포트폴리오 자산의 50% 내외를 코스닥150 선물 매도
벤처기업 요건(벤처기업 해제 후 7년 이내 기업 포함) 해당 종목 등